4. 조 사

4.1 사전조사 사항

- (1) 굴착작업계획 수립 전에 굴착장소 및 그 주변지반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.
- (가) 지반 형상·지질 및 지층의 상태
- (나) 균열·함수·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
- (다) 지하매설물 도면 확인 및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
- (라)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

4.2 시공 중 조사 사항

공사진행 중 사전조사 된 결과와 상이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완을 위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에 따라 작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법이 결정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.

5. 굴착작업 안전기준

- (1) 굴착면의 기울기 및 높이의 기준은 안전보건규칙 제338조(지반 등의 굴착 시위험방지) 제1항 별표 11(굴착면의 기울기 기준)에 의한다.
- (2) 사질지반(점토질을 포함하지 않은 것)은 굴착면의 기울기를 1:1.5 이상으로 완만하게 하고 높이는 5m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.
- (3) 굴착·깎기 비탈면에는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44조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관계 법령·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단을 설치하며, 소단의 위치와 폭은 시공여건과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